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I.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업무범위에 신고 등의 보호 등 위반행위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추가함(안 제12조제6호 신설).
- 신고의 처리 유형인 송부와 종결 규정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도 이첩과 동일하게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처리 과정에서 피신고자에게 대한 의견 또는 자료 제출 기회를 부여하도록 함(안 제13조의3 신설).
- 신고자 보호 규정 위반 등과 관련한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원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 전환함(안 제23조)

II. 검토의견

□ 신고에 대한 종결처리 주체에 조사기관 추가(안 제14조)

안 제13조의3은 신고의 처리 유형인 송부와 종결에 관한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등의 내용이고, 안 제14조는 그에 따라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함)의

사건처리 절차, 신고자에 대한 사건처리결과 통보, 신고자의 이의신청 등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현행 시행령 제14조제1항¹⁾에 따르면 조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으나, 개정안 제13조의3제2항 단서는 신고 종결처리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에만 부여하고 있어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등에도 사건을 종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신고가 안 제13조의3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행 시행령과 같이 조사기관도 접수 또는 이첩·송부된 신고를 종결처리 할 수 있도록 안 제14조제1항 단서에 조사기관의 종결처리 권한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밖에 안 제13조의3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에 관한 내용이고 안 제14조는 조사기관의 신고 처리에 관한 내용인 점을 고려하여 안 제

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13조의3 및 제14조의 제목을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 처리”, “조사 기관의 신고 처리”로 수정하였고,

안 제13조의3제2항은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조사등”으로 약칭하고 있으나 약칭의 실익이 적을 뿐 아니라, 제14조에는 동일한 내용으로 “조사·감사 또는 수사”라고 명시된 점을 고려하여 약칭을 삭제하고 “감사·수사 또는 조사”를 “조사·감사 또는 수사”로 통일하는 등 경미한 자구를 수정하였음(주서본 참조).

(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